

【 6 】 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6. 11.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1. 제안이유

- 보조금 사업관리를 위한 「체크카드제」 전면운영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카드 사용 의무화(안 제12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카드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중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 내지 제17조를 제13조 내지 제18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보조금 집행방법)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출은 예외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2조 < 신 설 ></p> <p>제12조(생략)</p> <p>제13조(생략)</p> <p>제14조(생략)</p> <p>제15조(생략)</p> <p>제16조(생략)</p> <p>제17조(생략)</p> <p>제19조 <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u>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재정법</u>」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2조(보조금 집행방법)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u>보조금카드(이하 "카드"라 한다)</u>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감사수당, 공공요금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지출은 예외로 한다.</p> <p>제13조(현행과 같음)</p> <p>제14조(현행과 같음)</p> <p>제15조(현행과 같음)</p> <p>제16조(현행과 같음)</p> <p>제17조(현행과 같음)</p> <p>제18조(현행과 같음)</p> <p>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규칙으로 정한다.</u></p>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 - 2005. 8. 4 전부개정, 2006. 1. 1 시행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 - 2005. 12. 30 전부개정, 2006. 1. 1 시행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2006.5.10)

9-1.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금(307-03)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9-2. 민간행사 보조(307-04)

- 행사종료 후에는 반드시 민간경상보조금의 정산방법에 의해 정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정 2003. 10. 19 조례 제3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결정통보서를 보조금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결정통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의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 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사용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된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때
2. 사업을 폐지한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는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